[서식 예] 양수금청구의 소(공사대금 양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건축업자인 소외 ◈◈◆로부터 자금회전이 잘 안되어 어렵게 도급 받은 건물신축공사가 지연되어 많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 ○. ○. 변제기일을 20○○. ○. ○○.로하여 금 50,000,000원을 소외 ◈◈◈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그런데 소외 ◈◈◈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미뤄 원고는 소외 ◈◈◈ 에게 신속히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소외 ◈◈◈는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공사비를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하

-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1. 갑 제2호증채권양도양수통지서1. 갑 제3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1. 갑 제4호증공사대금지불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 1통1. 소장부본1통1. 송달료납부서1통

○○지방법원 귀중

		corkil (1)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 인지액 : ㅇㅇㅇ원(☞ · 송달료 : ㅇㅇㅇ원(☞		아래(2)참조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려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취득한다(대법원 2010.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칙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에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에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부터 2주 이내('장도인과 신 채권' 양도인과 신 채권' 부터 후자에게로 여 차건 등도에 의하여 채건 등도에 의하여 채건 등도에 의하여 제 등지 이 통지 예 기가 이 등지 이 되었다. 지명채권의 지명채권의 기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이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 한다는 전에 되었다. 한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두 1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여기사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기와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310 판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투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경 계약서를 청부하여 공증담당 변경 계약서를 청부하여 공증담당 변경 계약서를 청무하여 가입한 날자는 첨투반점 계약서를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불 것은 아니어서,그 경우 채권양도면는 선무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건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생대하기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제제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제제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배제하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제가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제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라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